

2006. 11. 17(금) 10:00



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거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안 4
3.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1. 8
- 제출자 : 거창군수(사회복지과)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 11. 14(제1차 총무전문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6 - 58호

2. 제안설명 요지

○ 개정이유

- 2006. 2.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안 제6조~제8조)
-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센터의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2조)
-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13조)
-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2006. 2.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 7.23부터 시행한 기존의 「거창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이 관계법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조례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경상남도 본청과 시군의 조례안들을 참고로 하여 현실에 불부합되고 있는 부분이나 표준조례안의 내용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부분들이 있어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으며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시달된 표준조례안에서는 생략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 부활시킨 사유와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1. 8
- 제출자 : 거창군수(보건소)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 11. 14(제1차 총무전문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6 - 60호

2. 제안설명 요지

- 계획의 필요성
 - 군민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시책사업 추진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P3).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P7~P34)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P37~P66)
 - 건강증진사업 계획(P69~P99)
 - 개별 사업계획(P119~P161)
 -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P165~P17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제①항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마스터 플랜임에도 자료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재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된 의안으로써, 금회 임시회에 재심의 받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안임.
- 따라서 동 계획안의 검토에서는 검토범위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검토 지적된 미비사항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주요지적 내용별로 조치사항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함.
- 주요지적 내용별 조치사항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 1) 7페이지 지역개황도에 대하여
 - ⇒ 인근 군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개황도를 첨부하여 관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위치를 표시하여 보완 조치 ※ 확인자료 : 계획서 P 8 참고
 - 2) 11페이지~34페이지까지 지역건강 현황 작성부분에 대하여
 - ⇒ 거창군에서 자료관리 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나, 부족한 건강지표 목록 변수에 대하여는 도청에서 2007년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별 건강자료 목록 변수에 대하여 분석계획에 있으므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동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다는 의견으로 금회 제4기 계획에는 보완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됨 ※ 확인자료 : 계획서 P11~34 참고

- 2) 사용된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자료의 출처를 최대한 명시하여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전체적으로 각종 현황에 대한 자료출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표 하단에 자료출처를 표시하여 조치
 ※ 확인자료 : 계획서 P11~34 참고
- 3) 지역건강 사회분석에 필요한 건강정보 자료는 자료분석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 거창군 개황도, 인구현황, 의료이용 현황, 보건의료지원 현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신규로 요약정리 삽입·보완 조치 ※ 확인자료: 계획서 P34~37 참고
- 4) 지역사회 현황 결과 총괄기술 및 추후전망 내용에 대하여
 ⇒ 보건소에 있는 12개 목록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점·약점에 대하여 기존내용 전부를 수정하여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보건사업 방향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표현 조치 ※ 확인자료: 계획서 P37 참고
- 5) 중점과제 선정이 거창군 지역의 주요질병 유병율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선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동 계획서 p38에 신규로 『2-4 중점과제 선정』이란 항목을 설정하여 선정사유, 중점과제 관리계획을 현실적으로 서술 보완조치
 ※ 확인자료 : 계획서 P38 참고
- 6) 이밖에도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장단점 분석 부분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및 선정배경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미기술된 부분, 구강보건사업 목표설정중 구강보건 의식형태수준에 대한 3개지표의 목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 기존 내용 전부를 대다수 수정하였으며, 구강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는 주민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을 하여, 표 하단에 선정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 등 조치보완.

※ 확인자료 : 계획서 P78, p106, p107 참고

- 이상으로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32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보완조치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 계획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간다면 해결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4차)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1. 8
- 제출자 : 거창군수(재무과)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 11. 14(제1차 총무전문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6 - 61호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거열산성 군립공원 및 죽전근린공원 구역내 사유지를 사전에 매입, 향후 공원조성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면적	예정금액	비고
취득	토지	합 계	4필지	8,875	168,968	
		소 계		6,991	55,928	
		거창읍 상림리 732	답	2,198	17,584	거열산성 군립공원
		거창읍 상림리 733	“	4,793	38,344	
		소 계		1,884	113,040	
		거창읍 상림리 382-14	전	694	41,640	죽전근린 공원
		거창읍 상림리 382-15	“	1,190	71,4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열산성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 '83년부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거열산성은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구역내 약수터 주변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55,928천원의 예산으로 소유자와 협의된 2필지 6,991m²를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우선 매입하여 산책로 데크, 화초식재, 간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유지 매입 소요예산 55,928천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원구역내 개인사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시 등산객 편의도모 및 대다수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향후 거열산성 공원 조성계획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됨.

◆ 죽전 근린 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입

- '76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죽전근린공원은 그간 열악한 군 재정과 현실성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여, 공청회 등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 2007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공원구역내 협의 가능한 사유지를 부분적으로 우선 매입한다는 취지하에, 금회 소공원 조성을 위한 짜투리 땅 매입 추진시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는 토지 2필지 1,884m²를 113,040천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 수립 이전에 매입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거열산성 사유지 매입과 함께 소요예산 113,040천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 하려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참고로, 현 공원부지는 89필지 57,000m²로서 '94년도 군청 이전계획에 따라 40필지 30,685m²를 기 매입하였고, 현재 49필지 26,315m²가 남아있는 상태임.
-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잔여부지의 매입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금번 사유지 매입 (2필지)을 계기로, 향후 공원구역내 타 필지에 대한 매입요청 등 일시적·다발적 민원발생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11. 8
- 제출자 : 거창군수(재무과)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 11. 14(제1차 총무전문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6 - 62호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웅양면 보건지소 및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 분	재산 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 지 목	면 적	예정금액 (추정가액)	비 고
취 득	건물	웅양면 노현리 일원	건물	335	517,608	웅양면
	토지	"	토지	990	60,000	보건지소
	건물	북상면 갈계리 일원	건물	335	517,608	북상면
	토지	"	토지	990	60,000	보건지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용양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용양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내·외부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은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243m² 규모의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지소에서 주차공간 등 제반여건이 양호한 적정위치를 선정 335m² 정도로 건물을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예산 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 취득 및 처분
 - 건물(취득 및 처분) :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 토지 : 취득 1,000m²이상 , 처분 2,000m²이상
- 용양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77백만원 중 이전건축비 477백만원 (국비 318백만, 도비 159백만)은 확보[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 -33296('06.11.02) 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되었으며, 군비(부지매입비, 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 100백만원을 '0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주차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됨.

◆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북상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 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은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246㎡ 규모의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에서 주차·대기 공간 등을 확보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335㎡ 정도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북상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77백만원 중 이전건축비 477백만원 (국비 318백만, 도비 159백만)은 확보[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3296('06.11.02) 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 되었으며,

군비(부지매입비, 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 100백만원을 '0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주차·대기 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나,
- 웅양 및 북상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은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통보가 늦어져, 현재 이전 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7년 당초예산(군비 부담)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므로, 향후 신축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